

契約遵守事項과 注意事項

— 各種限界를 劃定해야 —

— 承 前 —

30. 契約製品販路關與

技術導入契約製品の販賣에 관하여는 實施許諾者 또는 그 指定者를 통하여 하도록 義務를 지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規定은 實施權者에게 一律적으로 不利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販賣時에 使用上의 劣우하나 애프터서비스面에서 어느정도의 技術的 知識이 要求되는 製品에 대해서는 短期間에 販賣要員의 養成이 困難하므로 이같은 경우는 實施權者가 一時的으로 實施許諾者의 販賣網을 利用하여 自信이 생겼을 때 自社의 販賣網을 利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實施許諾者로서도 契約前에 自社製品의 相對國에의 輸出에 대해서 特定の 第3者와 相對國內에서의 販賣總代理店 契約를 締結하였을 때에는 技術提供에 따른 生産開始後에도 그 製品의 販賣에 대하여 從來의 契約關係를 繼續하려 希望하는 일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實施許諾者가 契約製品의 販賣 價格이나 數量등에 대해서까지 規制하려 할 경우에는 操心해야 한다. 따라서 販路에 대해서는 契約規定上 強制的 義務가 賦與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實施權者의 要求가 있을 경우에 局限해서 實施許諾者가 自社 또는 그가 指定하는 特定の 第3者를 통해서 販賣하도록 協力하는 條項을 插入해야 한다.

31. 契約遵守努力條項

獨占契約의 경우에는 契約期間中 實施權者는 契約製品의 製造, 販賣促進에 最善의 努力을 한다는 條項을 規定하는 수가 있으며 이를 一般的으로 best effort clause라고 불린다.

이 規定의 趣旨는 實施許諾者가 獨占의 實施權을 享受하는 경우에도 實施權者가 生産을 開始하지 않을 경우에는

實施許諾者로서는 期待한 實施料를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獨占契約인 까닭에 他人에게 許諾하여 技術料를 받을 機會가 못되므로 實施許諾者側의 要求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非獨占契約의 경우에는 이같은 規定은 意味가 없으나 間或 特殊한 規定을 設定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一定한 生産規模의 工場 完成時期 明示, 生産實績의 具體的 目標을 設定하되 同契約條項이 誠實히 履行되지 않을 경우에는 獨占契約을 非獨占契約으로 變更하거나 解約한다는 등의 制裁規定을 插入하는 수가 있다. 다만 實施許諾者로부터 미니멈條項의 設定을 要求받는 경우에는 契約履行努力條項을 設定함으로써 그 要求를 回避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實施權者로서는 有利할 때가 없지 않다.

32. 免責條項과 責任追求限界

技術實施許諾者가 提供한 技術情報에 缺陷이 있어 實施權者가 蒙害 또는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이 請求되었을 경우에도 實施許諾者는 전혀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免責條項이다.

예를 들어 實施許諾者의 情報는 正確했으나 製造方法이 나빠서 發生하는 問題의 경우에는 이 規定이 不可避하다 하겠지만 提供된 技術資料가 分明히 誤謬로 判明되었을 경우에는 無理한 條項이 된다. 그러므로 實施許諾者側의 誤謬에서 發生하는 事項은 그 內容에 따라 實施許諾者에게 損害의 一部를 分擔시키는 但書가 붙도록 契約를 꾸며야 한다.

그 文例로서는 「實施許諾者의 잘못된 指示, 技術資料, 圖面 등은 어느 것이나 無料로 訂正하고 또 實施許諾者의 잘못에 따라 實施權者가 蒙害하였을 경우의 損害에 대하여는 「實施許諾者가 辦償한다」고 規定하되 그 補償額에 대해서는 「實施權者가 實施許諾者에게 實

際로 支拂한 代價를 超過하지 않는 金額으로 한다」등으로 支拂限度를 정하기도 한다.

33. 最惠實施者待遇方法表示

最惠實施者待遇方法表示條項은 實施許諾者가 契約締結當初의 實施權者와의 契約條件보다 有利한 條件으로 第3者에게 實施權을 許諾하였을 때에는 實施許諾者는 當初의 實施權者에게 그 變更條件의 內容을 通報해야 하되 이 경우의 當初實施權者는 第3者의 實施權이 有効日以後 이와 同一條件으로 實施權의 許諾을 要求할 수 있다는 條項이다.

이 條項의 趣旨는 同一技術에 대하여 同一條件으로 競爭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實施權者側의 要求로 設定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同一條件이란 技術의 對象範圍, 特許權의 數次까지를 同一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實施料率, 料率의 算定方法등 주로 代價의 支拂條件을 均等히 하려는데 있으며 이들 條件이 相異한 경우에 實施權者가 有利한 方向으로 變更할 수 있도록 選擇權을 保有하는데에도 그 目的이 있다.

34. 實施代價의 送金

實施權者로부터 技術料를 正確히 徵求하기 위하여 契約書中에 各種 支拂方法을 明記하는 것이 常例가 되어 있다.

1. 代價의 支拂時期

通常 런닝 로열티에 관해서는 1年을 數回로 나누어 그 各期の 末日에서 一定期間 似內 즉 30日 내지 60日 似內에 그 各期の 製造販賣實績을 詳細히 實施許諾者에게 通報케 하는 한편 이에 對應하는 代價를 支拂하게 한다.

다만 1年을 몇번으로 나누느냐 하는것은 契約當事者의 意向이나 製品의 性格에 따라 다르며 實施權者의 立場에서는 自社의 決算期와 맞추는 것이 有利하다.

2. 代價支拂과 換率

代價의 支拂은 實施許諾者의 指定場所인 去來銀行으로의 送金이 通例이며 技術料의 支拂外貨表示는 外國指定通貨가 常例이다.

3. 技術料計算資料의 提示

實施許諾者는 그가 받는 代價의 妥當性을 確認하기

위하여 實施權者에게 所定資料의 提示를 義務화하게 된다. 計算期間, 製品의 種類, 販賣量, 實量販賣價格, 로열티의 料率 등이 그것이다.

計算書는 正確히 記載함이 彼此의 信用關係上 必要하다. 또 帳簿에 대해서도 實施許諾者가 任命하는 者인 公認會計士로 하여금 監査할 수 있도록 契約上에 明示하는 수가 있으나 利害關係者가 아닌 第3者이므로 妥當한 措處라고 봐야 한다.

35. 契約의 準用法과 管轄法院

技術契約實施上 紛爭이 發生할 경우에 對備하여 國際契約의 性格上 어느 나라의 法律을 適用하여 處理하느냐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常例이다. 다만 力學上 實施許諾者의 主張에 따르는 수가 있으나 準用法의 決定은 契約實施場所, 工業所有權의 登錄國 등을 考慮하여 契約實態에 即應되는 合理的 判斷이 貫徹되도록 해야 한다.

準用法이 明示되지 않은 경우에는 當事者의 默示의 意思, 契約內容, 契約에 使用된 用語, 商慣習등의 諸般事情을 綜合判斷, 決定해야 한다.

管轄法院이 明示된 때에는 例外이지만 明示規定이 없을 경우에는 原告가 될 當事者의 判斷에 맡기게 되며 勝訴判決法院地域에서 判決이 執行되게끔 被告의 住所地管轄法院에 提訴하는 것이 常例가 되어 있다.

36. 口頭 및 覺書

契約의 交渉過程에서 口頭諒解, 覺書가 契約成立後 契約本文과의 矛盾을 豫防하기 위하여 契約締結前의 口頭諒解 또는 覺書가 모두 失効하고 契約書에 記載된 條項만이 有効하다거나 契約解釋은 契約書에 記載된 條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趣旨規定이 設定된 경우가 있다. 完全合議(entire agreement) 또는 唯一한 諒解(sole agreement)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規定이 있으면 契約締結以前의 口頭 또는 書面에 따른 諒解는 契約當事者를 拘束하지 않으나 이같은 規定이 없으면 契約前諒解도 原則적으로 有効하다. 다만 紛爭이 있을경우 口頭諒解 따위는 實證이 어려우므로 重要事項은 반드시 契約書本文中에 記載해 두어야 한다.

— 계 속 —